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기획재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7. 26. 진선미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 2024. 7. 2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5.9.9.) 상정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5.9.16.) 상정

제3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5.9.22.) 상정

제4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5.9.29.) 상정, 의결(수정가결)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25.9.30.) 상정,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진선미 의원)

현행법은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와 행정청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음.

한편, 협동조합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규모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와 같이 다수의 집합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의 회의 개최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불명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지도록 하고, 협동조합 이사회의 비대면 방식인 원격영상 회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협동조합의 원활한 행정업무를 도모하며,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32조, 제52조, 제53조, 제58조, 제71조 및 제

10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 요지

해당사항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정태호)

변경신고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현행법에서도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 비대면 개최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이사회 의 비대면 개최 근거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붙임] 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제 안 자 : 기획재정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변경신고 사항은 신고의 중요한 사항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현행법상으로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대면 방식의 이사회 개최가 가능하므로 비대면 방식의 이사회 근거 신설 조항을 삭제함(안 제15조제1항 후단, 안 제32조제5항 및 제71조제1항 후단 등).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제1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안 제32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5항으로 한다.

안 제71조제1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u>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 ----- ----- ----- ----- ----- ----- ----- ----- ----- ----. ----- <u>사항</u> <u>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 ----- ----- -----.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 ----- ----- ----- ----- ----- ----- ----- ----- ----- ---. ----- <u>사항</u> <u>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② ~ ⑥ (개정안과 같음)
제32조(이사회) ① ~ ④ (생략)	제32조(이사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이사회)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⑤ <u>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 및 이</u>	<삭 제>

여야 한다. 신고한 <u>사항</u>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② ~ ⑤ (생 략)	-----<u>사항</u> <u>중 기획재정부령으</u> <u>로 정하는 사항---</u> ----- -----. ② ~ ⑤ (현행 과 같음)	-----<u>사항</u> <u>중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사항-----</u> ----- -----. ② ~ ⑤ (개정 안과 같음)
--	--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후단 중 “사항”을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71조제1항 후단 중 “사항”을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신고한 사항을 이 법 시행 이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u>사항</u> 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 ----- ----- ----- ----- ----- ----- ----- <u>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u>대차대조표</u> ,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① -- ----- ----- <u>재무상태표</u>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u>대차대조표</u> 를 작성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 ----- ----- ----- ----- <u>재무상태표</u> -----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58조(청산인) ① (생략)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71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략)

제103조(청산인) ① (생략)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상태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8조(청산인)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재무상태표-----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1조(설립신고 등) ① -----

	1	0	0
--	---	---	---

11	0	0	0	2	2	0	1	2	1	0
----	---	---	---	---	---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3조(청산인)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u>대차</u> <u>대조표</u>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 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③ ~ ⑤ (생략)	-----<u>재무상</u> <u>대표</u>----- ----- -----. ③ ~ ⑤ (현행과 같음)
---	---